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3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안태준·조인철·정준호

복기왕ㆍ윤종군ㆍ소병훈

염태영 · 정성호 · 박해철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해지고 있음.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것과 달리,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개발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 과 정에서 1년 이상의 불필요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5조의3제2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3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구 내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
성 검토) ① (생 략)	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	
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	
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주택법」 제2조제24호에</u>
	따른 공공택지의 사업시행자
	가 해당 지구 내에서 추진하
	는 공공주택건설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